

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

2004. 3.13 환경부 고시 제2004- 40호

2008. 1.29 환경부 고시 제2008- 13호

2011.12.28 환경부 고시 제2011-187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(이하 “먹는샘물등”이라 한다)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디스켓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수질·수량측정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1.29, 2011.12.28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취수정”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. <개정 2011.12.28>
2. “감시정”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.
3. “지하수위”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.

제3조(전문기관의 지정)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한다. <개정 2008.1.29>

제4조(전문기관의 기능)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08.1.29>

1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 수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및 저장 <개정 2011.12.28>
 - 가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별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량·수질 측정자료의 수집

나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별, 취수정별, 감시정별 수량·수질 측정 및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기록·저장

2. 측정자료의 분석

가. 취수정의 수량·수질 측정자료의 분석. 단, 각 취수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는 취수량과 수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

나. 감시정의 수량·수질 측정자료의 분석. 단, 감시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의 분석은 수위, 전기전도도, 온도,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

다.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유무 확인

라. 취수정과 감시정간의 상관관계 분석

제5조(자료의 보고) ①전문기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된 수량 및 수위 측정자료의 이상유무 등을 분석하고, 측정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수질·수량 측정 및 분석자료의 제출을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,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 받은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12.28>

제6조(준수사항)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자료의 보관

가. 취수정별 측정자료 : 5년이상

나. 감시정별 측정자료 : 5년이상

다. 제조업체별, 취수정별,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: 5년 이상

②전문기관은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받은 측정자료중 수질·수량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사항이 발견되

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.
③전문기관에 수집·저장된 측정자료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수량 및
수질관리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
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12.28>

부 칙 <2004. 3.13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 1.29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12.28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